

속초시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체육정책이 우수 체육인 양성을 위한 전문체육 위주에서 국민의 건강
한 생활을 영위토록하는 생활체육의 등장으로 확대 개방적인 방향으로
지향하므로서 기 구성된 협의회의원회에 생활체육 관계자를 새로이 위
촉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협의회 기능이 종합
적인 조정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.

2. 주 요 골 자

○ 협의회 위원 위촉 (개정안 제 3 조 참조)

· 구성인원 : 15인 이내

· 개 정 안 :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시 체육회 부회장 1인,
시 생활체육협의회장, 부회장 및 지역내 공공기관, 직장(기업체)
사회단체, 직능단체, 체육단체,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
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를 위촉

○ 협의회 서기 명칭 개정 : 건전생활계장 ⇒ 체육청소년계장

3. 참 고 사 항

○ 국민체육진흥법 제 5 조 제 3 항 ————— 별 ————— 첩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(구성) ③ 위원은 시 체육회 부회장 1인, 시 생활체육협의회장, 부회장 각 1인과 지역내 공공기관, 직장(기업체), 사회단체, 직능단체, 체육단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.

제 6 조 제 2 항중 " 분기별로 1회 " 를 " 년 1 회 "로 한다.

제 7 조 제 2 항중 " 건전생활계장 " 를 " 체육청소년계장"으로 한다.

제 7 조의 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7 조의 1(실무자회의) 협의회는 제 2 조에 관한 중요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